

관세법인 천지인 관세사 4월 교육자료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와 관세평가 핵심 쟁점 분석

발표자 - 전현일

출처: 주간관세무역정보지(제2173호~2176호) 및 계간관세사 종합

중국산 아연 냉연제품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 예비 판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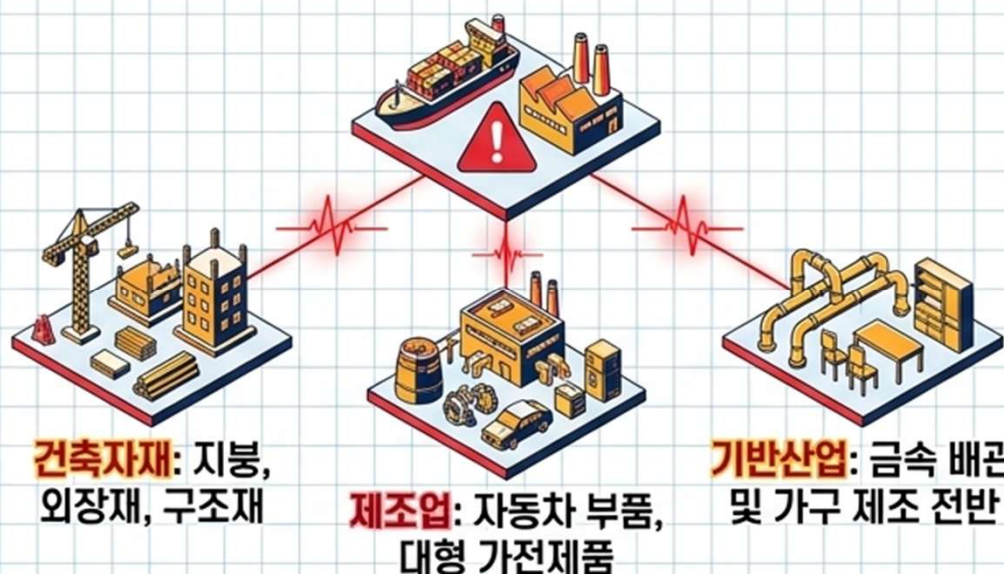
무역위원회 예비 긍정 판정 결과

잠정 부과 관세율:
22.34% ~ 33.67%



기존 한-중 FTA 무관세 혜택 상실 및
기본 관세율 8% 대비 막대한 리스크 발생

영향권 산업 (Supply Chain Risk)



규제 대상 물품

- 아연 및 아연합금으로 표면처리한 두께 4.75mm 미만의 냉간압연 제품

향후 컴플라이언스 일정

- 현재 현지 실사 및 공청회 진행 중
- 9월경 최종 판정 예정 - 선제적 공급망 다변화 검토 요망 !

[인도] 에너지/위기 돌파구 및 생산 거점 Slide

한국한 에너지 위기 철폐, 한국을 방패 하는 전국을 외본 회상과 팽연정형 전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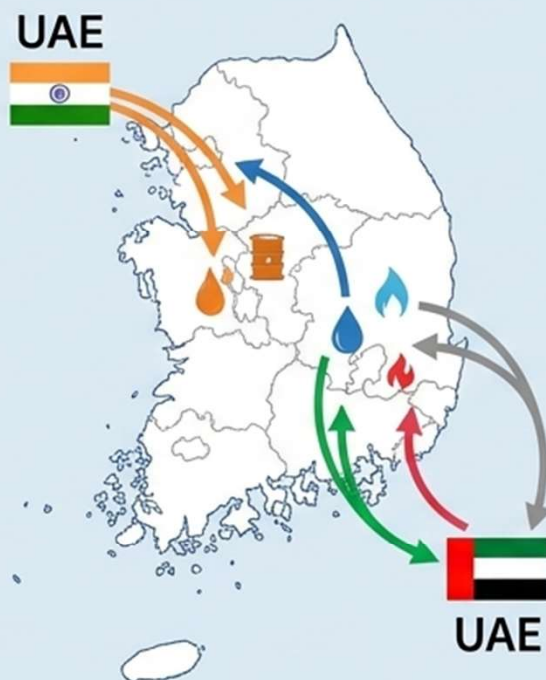
[인도] 에너지 위기 돌파구 및 생산 거점

■ 핵심 수혜

- 원유: 관세 3% → 10년 내 철폐 (에너지 안보 확보)
- 나프타: 0.5% → 5년 내 0.25%로
- 천연가스: 3% → 즉시 철폐

■ 산업 효과

- K-자동차, 무기류, 의료기기 관세
- 철폐로 ~10년대 생산 거기 관세 철폐로 중동 시장 진출 가속화.



[UAE] 에너지/관세 장벽 철폐 (발효 임박)

■ 핵심 수혜

- 원유: 관세 3% → 10년 내 철폐 (에너지 안보 확보)
- 나프타: 0.5% → 5년 내 0.25%로 50% 인하
- 천연가스: 3% → 즉시 철폐

■ 산업 효과

- K-자동차, 무기류, 의료기기 관세 철폐로 중동 시장 진출 가속화.
- 이번 협정으로 양국은 품목수 기준 한국 92.5%, UAE 91.2% 개방한다

공급망 리스크 대응: 국내 석유화학 원료 긴급 통제

중동발 충격으로 인한 에틸렌, 프로필렌 등 중간재 수급 불안에 대해,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전방위 대응 체계 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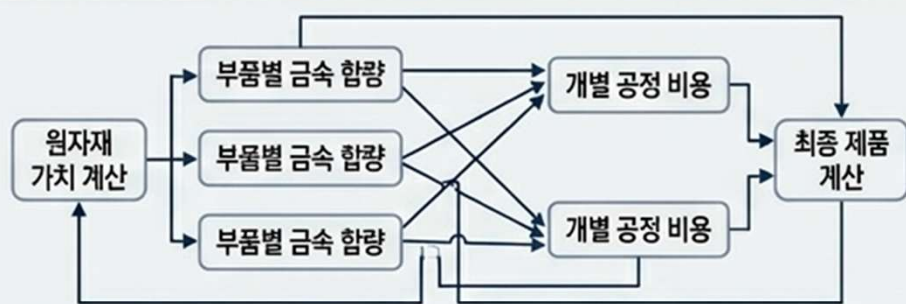


- 적용 기간: 2026년 4월 15일 ~ 6월 30일
- 주요 규제 내용: 1.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에틸렌, 프로필렌 등 23개 HS 10단위 품목. 보세구역 반입일과 공고일 중 늦은 날 기산.
2. 매점매석 금지: 원료부터 최종 제품(PE, PP 등)까지 유통 단계 전반의 재고 비축 및 출고 조절 행위 엄단.

Strategic Insight: 단순 가격 안정책을 넘어 경제안보 차원의 공급망 관리.
수입업체의 통관 지연 리스크 원천 차단 필요.

미국 철강·알루미늄 관세(232조) 부과 기준 개편

변경 전 (Before)



복잡한 금속 함량가치 산정 방식 (부품별 개별 계산)

변경 후 (After)

완제품 전체 가격(Full Customs Value)



완제품 전체 가격(Full Customs Value) 기준으로 일원화

면제 기준

- 철강·알루미늄·구리 총중량이 완제품 전체 중량의 15% 미만인 경우 품목관세 제외 (일반 글로벌관세 10%만 부과)

관세율 적용 체계

- 50%: 금속이 전적으로 사용된 제품 (스테인리스 강 등)
- 25%: 파생제품 중 냉장고, 에어컨 등 가전제품 및 기계
- 15%: 자동차 부품 및 특정 산업기계

산업별 파급 효과

- 부담 완화: 금속 함량이 적은 화장품, 초고압 변압기
- 부담 증가 우려: 완제품 가격 기준으로 과세되는 세탁기 등 대형 가전 및 일부 자동차 부품

부담 증가 우려

부담 완화

출처: 주간관세무역정보지 제2174호 - 통상 현안 체크

미국 IEEPA 상호관세 위법 판결과 '보편적 구제(Universal Relief)'

미 연방대법원과 국제무역법원(CIT), IEEPA 근거 관세의 전액 환급 명령.



- **판결의 핵심 (CIT 2026.3.4. 결정):**
미 확정(Liquidation) 수입 건 및 이의제기(Protest) 기간 내 수입 건에 대해 IEEPA 관세를 배제하고 확정/재확정하여 환급할 것을 CBP에 명령.
- **보편적 구제(Universal Relief):**
개별 소송 제기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수입자에게 적용되는 강력한 구제 조치.
(단, 미 정부의 항소 및 집행정지 신청 변수 상존)
- **주의 사항:**
무역확장법 232조(철강/알루미늄) 및 무역법 301조 관세는 여전히 유효. IEEPA 관세에 한정됨.

[진단 매트릭스]

상호관세 환급 성패를 가르는 3단계 불복 절차

수입 건의 '정산(Liquidation)' 여부에 따라 대응 전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1. 정산 전: PSC (사후정정신고)

- 대상: CBP가 아직 세액을 확정하지 않은 항목 (반입 후 314일 이내)
- 행위: 수입신고 사항에 대한 신고인의 자발적 정정
- 대응: 정산 과정에서 IEEPA 관세 배제 후 환급



2. 정산 후: Protest (이의제기)

- 대상: 정산(Liquidation) 완료 후 180일 이내
- 행위: 세액 확정에 대한 납세자의 이의 제기
- 대응: 재확정(Reliquidation) 절차를 통해 환급 진행



3. 기한 도과: CIT (국제무역법원 소송)

- 대상: 이의제기 기간(180일) 경과 항목. 원인 발생 후 2년 이내.
- 대응: 행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소송 (비용/시간 부담 큼)



환급 이면의 함정: 기업 리스크 통제 포인트

환급금 수령 과정에서 오히려 기존 통관 오류가 적발되어 추징당하는 역풍 주의.

 Risk Alert

환급청구권(IOR) 재확인:

DDP(관세지급인도) 조건 수출 시 환급 청구권은 한국 기업에 있음. 현지 수입자와의 사전 약정 및 환급금 안분 조율 필수.



환급 연계 CBP 전수조사 리스크 (The Audit Trap):

환급 심사 시 기존 신고내역(품목분류, 원산지, 과세가격)이 재검토됨. 오류 적발 시 환급이 아닌 대규모 추징(과소신고 가산세)으로 전환될 수 있음.



절차적 준비 요건:

- ACH(전자이체) 환급 계좌 사전 등록 필수 (제3자 지정 가능성 검토).
- 결과를 기다리기보다 PSC, Protest 등 법적 기한 내 선제적 쟁송 유지 필요.



Section 3. Deep Dive: 다국적기업 이전가격(TP) 사후보상조정과 세관의 관점 차이

글로벌 본사의 이익 보전 메커니즘과, 물리적 물품의 '실제 가치'를 추적하는 세관의 본질적 충돌.
WCO 사례연구 14.4를 중심으로 분석하는 과세당국 간 법리 해석의 간극.

출처: 계간관세사

이전가격(TP) 사후보상조정 메커니즘

사전에 설계된 본사의 목표 이익을 보전하기 위해 기말에 발생하는 회계적 이익 조정 행위.



1. 사전 TP 정책 수립 (연초):
본사는 수입자의 기능과
위험(제한적 유통업자)에 상응하는
'목표 매출총이익률'을 사전 설정.



2. 잠정가격 수입통관 (연중):
설정된 역산 가격을 기초로
연중 물품 수입 (관세 납부).



3. 시장 변동 및 결산 (연말):
예상치 못한 매출 급증/비용
절감으로 수입자의 실제
영업이익이 목표치 40% 대비
상당 초과 64%.



4. 사후보상조정 (기말):
초과된 이익 잔액을 회수하기
위해 본사로 사후 송금(상향 조정).



핵심 쟁점: 이 연말의 '송금액'이 연중 수입된 물품의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어야 하는가?

[대비 매트릭스] 관세당국 vs 국세청의 시각차



구분	관세당국 (Customs) - 제1방법	국세청 (Tax) - 이전가격
과세 대상	수입되는 '물품' 자체 (물리적 이동)	특수관계자 간 '거래 전체' (독립기업원칙)
기준 지표	판매조건에 따른 실제지급가격 (제1방법)	회계적 영업이익률 (거래순이익률법 등)
메커니즘 차이	개별 건 단위 가격결정 (일회성, 단위물품 기준)	지속적/통합적 가격 정산 (총량 기준 보상)
사후 송금의 성격	물품 대가의 추가 지급인가? (가산 요소)	독립 영업에서의 회계상 이익 조정
환급(하향조정) 태도	극도로 보수적 (세금 반환의 법적 리스크)	이중과세 해소를 위해 유연함

Insight: 사후보상조정은 물리적 거래 조건의 변동이 아닌, 세무상 정상가 원칙 준수를 위한 회계적 이익 배분의 성격이 강함.

사후보상조정액은 수입물품의 '실제지급가격'인가?

매출 증가나 비용 절감으로 발생한 초과이익 환원은 물품 대가가 아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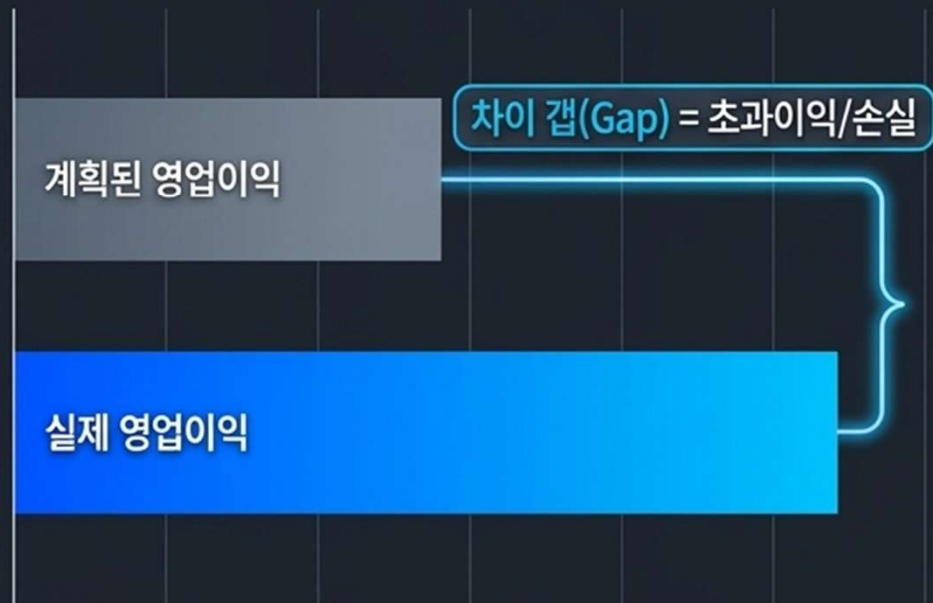


- 초과이익의 원인 분석 (WCO 사례연구 14.4 분석):
수입자가 거둔 초과 이익은 ① 시장의 수요 급증(매출 증가)이나 ② 경영 효율화(판관비 절감)에서 비롯됨.
- 관련성 및 판매조건 결여:
이러한 이익은 수입물품 자체를 구성하는 단가나 물리적 요소와 독립적으로 결정됨. 사후적으로 본사 송금이 발생하더라도, 이는 본사가 판매조건으로 요구한 수입물품의 대가가 아님.
- 결론:
초과 수익을 본사에 돌려주는 행위는 회계상 이익 조정일 뿐, 수입물품의 진정한 거래가격을 구성하는 '사후귀속이익'으로 자동 가산될 수 없음.

이전가격 오류의 파장: 가격결정공식 및 위험 분석의 실패

사전 설계된 TP가 정상가를 반영하지 못할 때 수입가격의 왜곡 현상 발생.

TNMM 시뮬레이션 비교



- **가격결정공식의 오류:** 본사가 시장 변동이나 마케팅 비용 증가를 간과하여 수입가격(TP)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 결과적으로 수입자는 정상 마진을 확보하지 못하고 손실 발생.
- **위험과 기능 분석 오류 (TNMM의 함정):** 수입자(제한적 위험 유통업자)가 영업비용 절감으로 예산을 뛰어넘는 고수익을 달성했을 때, 그 초과분이 수입자의 기능에 따른 보상임에도 TP 공식의 경직성 때문에 본사로 강제 회수됨.
- **시사점:** 사후보상조정의 발생 자체는 초기의 TPP(이전가격정책)가 정상적인 거래가격을 예측하고 분배하는 데 실패했음을 입증하는 결과물.

출처: 계간관세사

미국 CBP의 입장 전환과 사후보상조정 인정 5대 요건

과거 원칙적 불인정에서, 엄격한 공식을 전제로 한 '객관적 인정'으로 전환 (HQ 548314).

조건부 인정

미 CBP는 아래 5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사후보상조정을 실제지급가격 조정(상향/하향)으로 인정함.

5. 정상가격 부합: 정상가격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을 것.

4. 산식의 구체성: 미국에서 발생한 조정 및 계산 내역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계산 공식이 존재할 것.

3. 대상 특정: 해당 정책의 조정 대상 물품이 구체적으로 규정될 것.

2. 사전 신고: 수입자가 납세자로서 이전가격 산출방법을 수입신고서에 기재할 것.

1. 사전 문서화: 수입 전에 문서화된 이전가격 정책이 존재하고 결정방식이 명시될 것.

원칙적 불인정

실무 가이드: 사후보상조정의 제도적 개선 및 컴플라이언스

과세관청의 투명성 제고와 납세자의 절차적 의무 이행을 위한 공통 기준.

1. 실체적 요건

(송금 및 영수 공통 적용 기준 마련)

- 사후 송금(상향/추징)과 환급(하향) 모두에 동일한 법적 잣대 적용.

• 요건:

- ① 사전 문서화된 정책 존재
- ② 사전 약정 및 의무 존재
- ③ 물품과의 직접적 관련성
- ④ 객관적이고 수량화 가능한 산정

• 시사점:

WCO 사례연구 14.4 를 비롯한 국제적 논의에서는 이전가격 논의를 가격조정약관(PRC)로 보지 않고, 특수관계자 간 이전가격이란 독립된 영역에서 실제지급가격의 일부(판매조건)로 파악하여 관세평가를 진행하는 추세.

2. 절차적 요건

(사후보상조정 가능성 사전 명시)

- 수입신고 시 의무화: 수입신고 필증에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 대한 사후보상 조정 예정 유무' 체크 항목 신설.
- 수정신고 의무: 회계연도 종료 후 실제 보상조정이 확정된 시점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반드시 조정 내역 세관 신고 의무화 (위반 시 가산세 부과).

Section 4. Micro Compliance: 신약 임상실험용 마일스톤, 수입물품의 권리사용료인가?



마일스톤



권리사용료

[사건 개요]

다국적 제약사(수입자)가 해외 본사로부터 임상시험용 시약을 무상 수입. 이후 국내 제2상 임상시험 첫 환자 투약 성공 시점에 본사에 '개발 마일스톤(목표 달성 수수료)' 지급.

쟁점: 이 마일스톤 지급액이 수입 임상시약의 과세가격(실제지급액)에 가산되는 '권리사용료' 및 '판매조건'에 해당하는가?

[법원 및 조세심판원 판단: 비과세]

- 마일스톤은 수입물품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으며, 수입물품의 판매 조건으로 지급된 것이 아님.
- **핵심 비과세 논리:**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청구 법인이 취득한 권리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음.' 권리가 모호하고, 쟁점물품과 관련성이 있다거나 판매조건을 밝힐 수 없으므로 부과처분은 잘못 됨.

[개념 도해] 미래 가치(상업화권)와 현재 가치(임상시약)의 분리

마일스톤을 수입물품의 실제지급가격으로 흡수할 수 없는 논리적 근거.



- **물리적 대가 vs 무형의 투자금:**

수입된 임상용 시약은 연구 과정에서 소모되는 도구(현재 가치)에 불과. 반면 마일스톤은 임상 성공이라는 불확실한 성과를 딛고 장래에 실현될 '독점적 상업화 권리(미래 가치)'를 선점하기 위한 투자금 성격.

- **지급 의무의 독립성 (단절된 인과관계):**

마일스톤의 지급 의무는 수입 행위와 무관하게 '임상 단계의 성공적 통과'라는 성과 달성 시 제3의 계약에 의해 확정됨. 즉, 물품 수입을 위한 필수 조건(판매 조건)이 아님.

- **실질과세 원칙 재확인:**

무형자산에 대한 대가를 단순히 수입 행위가 수반되었다고 하여 물품 가격으로 흡수하는 것은 과도한 확장 해석임.

한-미 FTA 직접운송 원칙과 제3국 경유 시 예외 인정 요건



직접운송 대원칙

당사국 간 직접 운송이 필수.
비당사국(제3국) 경유 시 특혜 배제가 원칙임.

제3국 경유 시 예외 인정 요건 (허용되는 작업)

- ☒ 하역 및 재선적
- ☒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한 필수 공정
- ☒ 당사국 운송을 위한 필수 공정



절대 조건 : 비당사국 영역에서 반드시
'세관당국의 통제' 하에 머물러야 함.

직접운송 예외 입증 3대 필수 서류

1. 전체 운송경로 입증 서류 (통과 B/L, 복합운송서류 등)
2. 비조작 증명서 (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추가 가공되지 않음 증빙)
3. 세관 통제 입증 서류 (세관발행 보세구역 반출입확인증 등)

한-미 FTA 제3국 경우 실제 판단 사례 매트릭스



[O] 특혜 인정 사례 (직접운송 요건 충족)

행위: 미국산 물품을 싱가포르 보세구역에서 단순 일시 보관 후 한국 수입.
판단: 세관 통제 하의 보존을 위한 필수 공정으로 인정됨.

[X] 특혜 불인정 사례 (요건 위반)



사례 1. 허용 공정 초과 (독일)

행위: 미국산 폐수처리장치를 독일로 수출해 제어 소프트웨어 입력 후 한국 수입.
판단: 본질적 추가 공정으로 간주되어 특혜 불인정.

사례 2. 소분 및 개별 포장 (베트남)

행위: 미국산 연질캡슐을 벌크로 베트남 선적 후 소분/개별 포장하여 수입.
판단: 물품 상태 변경 우려 및 보존 목적 초과로 요건 위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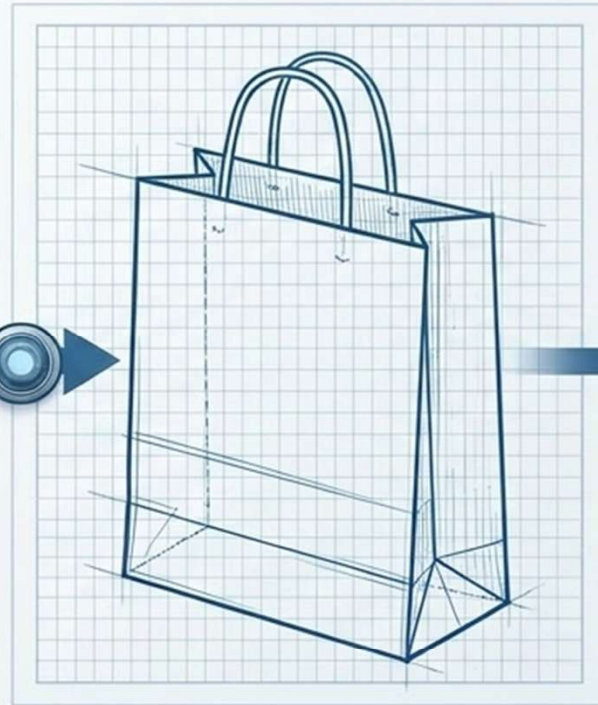
사례 3. 검사 목적 환적 (대만)

행위: 대만 FTZ에서 단순 환적 및 '검사(Inspection)' 진행.
판단: 한-미 FTA는 통과/환적 규정을 엄격히 해석하여 검사 절차도 위반으로 판정 (USMCA와 상이).

1회용 포장용기(쇼핑백 등)의 원산지 표시 의무와 면제 규정

원산지 표시 대원칙

- 관세율표상 용기로 별도 분류되어 수입되는 물품은 반드시 개별 용기에 원산지 표시 필수.
- 예: '쇼핑백의 원산지: 중국'



원산지 표시 면제 요건 (아래 2가지 동시 충족 시 생략 가능)

✓ 1. 품목 요건 (1회용)

- 1회 사용으로 폐기되는 포장용기일 것.
(종이박스, 종이 쇼핑백, PET병, 1회용 화장품 용기 등)

✓ 2. 주체 요건 (실수요자 직접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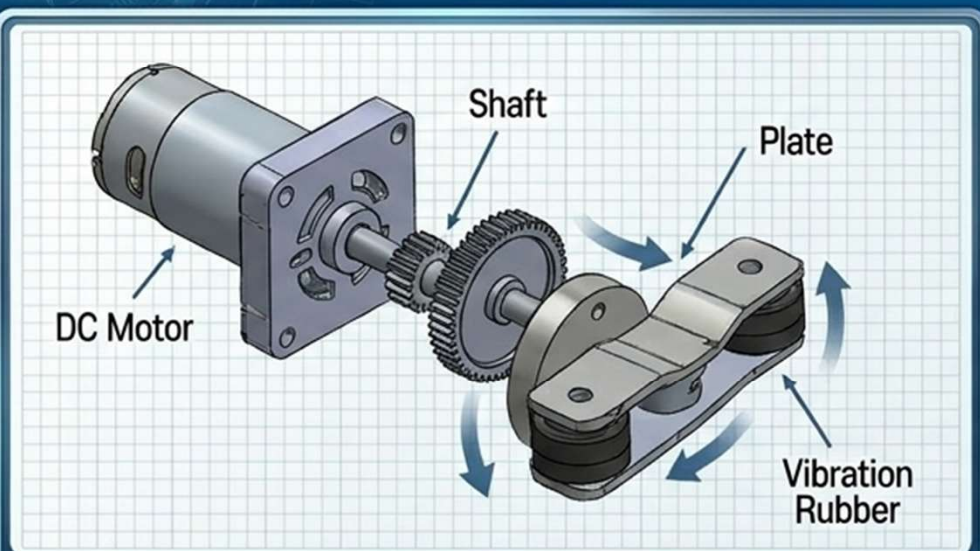
- 해당 용기를 '판매'할 목적이 아닐 것.
- 자사 제품을 포장할 목적(직접 제조/사용)으로 수입하는 사업자(기업)일 것.

실무 적용 결론

기업이 국내 제조품 포장용으로 종이 쇼핑백을 수입하는 경우, 개별 쇼핑백에 대한 원산지 표시 생략 가능.

[품목분류 심판례 1] 차량용 마사지 모듈 (Massage Module Assy)

쟁점 물품 : 자동차 시트에 장착되는 편심 회전 및 타격/진동식 모듈



품목분류 경합 쟁점



제8479.89호
(고유 기능을 가진
범용 기계류)

- 단순 회전 운동 변환
- 범용 기계류 분류 원칙

VS



제9019.10호
(마사지용 기기)

- 마사지 기능 특화
- 특수 목적 기기

결정 논리 및 분석 (Tear-down Analysis)

- ☑ 1차 판단 : 모터의 단순 회전력을 수직/진동 운동으로 변환하는 기초 기능만 보면 8479호 기계류로 볼 여지가 있음.
- ☑ 핵심 판단: 해당 모듈은 연직 방향으로 마사지 기능을 전달하는 특화된 부품(원 부품(Plate)과 진동을 분산하는 부품(Vibration Rubber)을 갖추고 있음.
- ☑ 최종 결론: 자동차 시트 장착용 부품이라 하더라도, 탑승자에게 특화된 '마사지'를 제공하는 고유 목적과 요소를 명확히 인정함.

최종 분류 확정



제9019.10-2000호 (마사지용 기기)로 분류

[조세심판결정례] 다목적 폴딩팬(Folding Fan) 및 실링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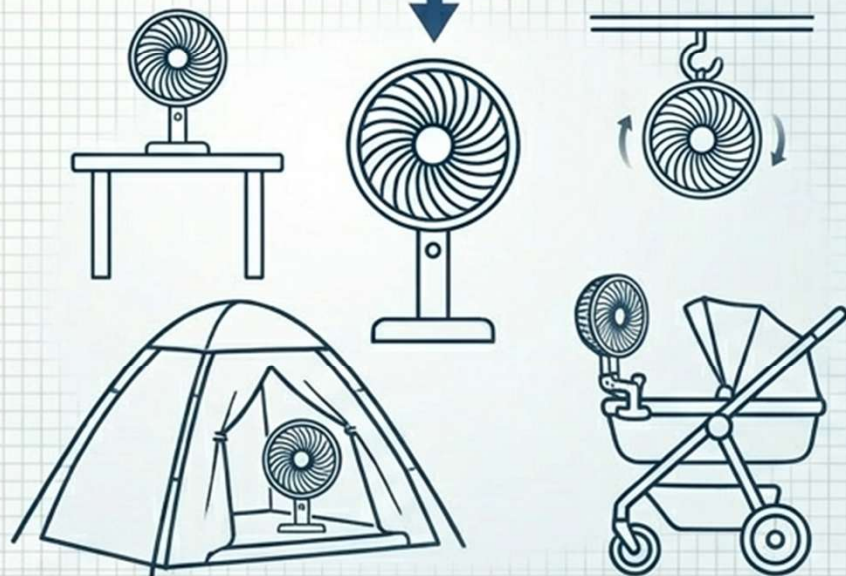
쟁점 물품 : 본체에 고리와 거치홀이 부착된 무선 이동식 소형 선풍기

품목분류 경합 쟁점

제8414.51호
(테이블/천장용 팬,
특혜관세 0%)

VS

제8414.59호
(기타의 팬, 기본관세 8%)



조세심판원 결정 논리 트리

- ☑ 납세자 주장 : 주로 테이블이나 천장에 두고 사용하므로 8414.51호 특게호에 해당한다.

심판원 기각 논리 (전용성 vs 범용성):

- ☑ 해당 팬은 텐트 타프, 나무, 유모차 등 실내외 공간 구분 없이 거치하여 '범용'으로 사용하도록 설계되었다.
- ☑ 제8414.51호는 관세율표상 열거된 특정 장소(실내 테이블/바닥/벽/천장 등) '전용' 팬만을 분류하는 매우 제한적인 특게호이다.

최종 분류 확정

- ☑ 제8414.51호 특정 장소 전용이 아닌 범용 이동식 선풍기이므로 특게호에서 배제, 잔여호인 제8414.59호(기타의 팬)로 정정 분류함 (세율 8% 부과).

[세번 바로잡기] 철강 제품의 형태학적 분류 (선 vs 봉)

수입신고 상태 : 흑색 철강 선재를 일정한 길이(350mm)로 반듯하게 직선 절단한 제품.

품목분류 경합 쟁점

제7217.90호
(철이나 비합금강의 선)

VS

제7215.90호
(그 밖의 봉)

선(Wire)



봉(Bar)의 법적 정의:
냉간 성형 또는 처리된 후
일직선 길이 상태로 인도되는 제품.



선(Wire)의 법적 정의:
횡단면 모양과 무관하게
반드시 '코일(Coil) 모양'의
냉간 성형제품이어야 함.

제72류 주석 엄격 규정 분석

- ☑ 선(Wire)의 법적 정의: 횡단면 모양과 무관하게 반드시 '코일 (Coil) 모양'의 냉간 성형제품이어야 함.
- ☑ 봉(Bar)의 법적 정의: 냉간 성형 또는 처리된 후 일직선 길이 상태로 인도되는 제품.

최종 분류 확정



일직선 상태로 절단되어 인도된 쟁점 물품은
'코일 모양'이 아니므로 제7217호(선)에서 원천 배제됨.
냉간 성형 후 추가 가공된 제7215.90호(그 밖의 봉)로 정정 분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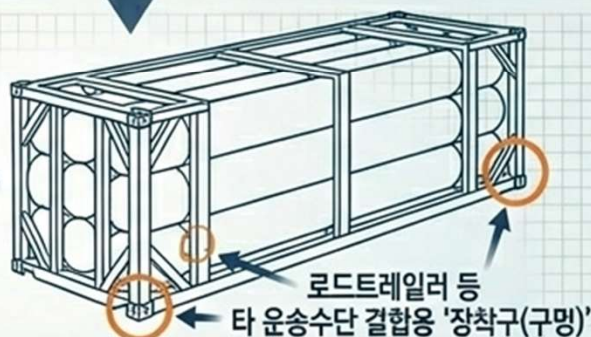
WCO 및 국내 품목분류 핵심 쟁점 심화 분석

압축천연가스(CNG) 운송 관 다발 컨테이너

경합: 제7311호
(철강제 가스용기)

VS

제8609호
(특수설계 컨테이너)



판단 기준 : 외부 프레임에 로드트레일러 등 타 운송수단에 부착할 수 있는 '장착구(구멍)'의 존재 여부.

결론 : 차량 등 운송수단 결합용 프레임이 존재하여 복합운송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것으로 인정.
제8609호 컨테이너로 분류 확정 (WCO 결정 국내 수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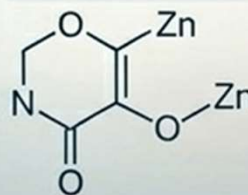
아연철황색 안료 (Zinc Ferrite Yellow)

경합: 제3206호
(기타 착색제/안료)

VS

제2841.90호
(금속산화물/아철산화물)

CHEMICAL ANALYSIS



판단 기준 : 착색제로 사용된다 하더라도 화학적 단일성 여부가 우선함.

결론 : 성분상 화학적으로 단일한 '아철산화물' 화합물임이 확인되므로 제32류(착색제)에서 배제하고,
제2841.90호(아철산화물)로 정정 분류함.

[품목분류 실무] 주된 기능 판정 및 사전심사 효력의 한계

과세당국의 사전심사 결과가 모든 유사 물품에 소급 적용될 수 없음을 확인.



다기능 사운드바



- 다기능 기계의 본질적 특성 (주된 기능 원칙):
여러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예: 라디오+스피커+앰프 결합 사운드바)는 제품의 외형, 구성, 기능 등 객관적 요소를 종합하여 가장 본질적이고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HS Code로 분류되어야 함.
-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의 엄격한 한계:
 - 사안: 과거 특정 모델(모델 A)로 사전심사를 받아 품목분류 회신을 받은 후, 이를 믿고 다른 유사모델(모델 B) 수입 시 동일 HS Code를 적용 소급 적용)은 신청 당시 특정했던 해당 '품명, 규격, 모델'과 완벽히 동일한 물품에만 국한됨. 모델명이 다르다면 사전심사 회신을 공적 견해 표명으로 보아 신뢰보호원칙을 주장할 수 없음.
- 시사점: 사전심사 통지서는 해당 모델에만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유사 물품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 다를 것이나 절대적 효력을 담보하지 않음.

질의 응답